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7. 23 선고 2019가단5303042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

담당변호사 임남구, 송호섭

피고B

변론 종결2020. 6. 25.

판결 선고2020. 7. 23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39,045,7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. 1. 13.부터 2019. 12. 2.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갑 제1 내지 7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

① 피고는 원고를 포함하여 9개 보험회사와 사이에 18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, 통원치료가 가능한 경미한 질병이거나 목격자 없는 가공의 사고였으므로 사실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거나 적절한 입원 치료 일수를 초과함에도 허위 또는 과장입원을 한 후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2008. 4. 17.경부터 2015. 7. 21.경까지 합계 190,791,346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, ② 피고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사기죄 기소되어 2018. 11. 30.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(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고단871호), ③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와 검사가 각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(광주지방법원 2018노3752호),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(대법원 2019도11363호) 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, ④ 한편, 피고가 위와 같이 사기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범죄사실에는 원고를 기망하여 2008. 4. 17.경부터 2015. 1. 12.경까지 총 68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39,045,729원을 편취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.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상당액인 39,045,72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15. 1. 13.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9. 12. 2.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장동민